춘천 롯데캐슬 위너클래스 입주자모집공고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9.11.28.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춘천시는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이며, 전용면적 85㎡이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의거하여 가점제 40%, 추첨제 60%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2년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 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과거2년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 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 · 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의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존주택의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9.11.28.)현재 춘천시에 거주하거나 강원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현재 해당 주택건설 지역인 춘천시 3개월이상 거주자(2019.08.28. 이전 계속 거주)가 우선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 · 시행되어 제23조 제2항 제7호에 의해 제4조 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 체류자(출국 후 계속하여 90일 초과 및 연간 183일 초과하여 국외 거주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니라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간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중 우선 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해외에 장기간(출국 후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경우)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당첨되는 것은 부정당첨자에 해당되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단순 3개월 미만의 단기여행, 출장, 파견 등은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가.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는 경우는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가능
  나.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지역 거주자로 청약가능
  다.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90일을 초과한 경우는 해당지역, 기타지역 모두 청약불가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호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 · 모, 장인 · 장모, 시부 · 시모, 조부 · 조모, 외조부 · 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 · 딸, 사위 · 며느리, 손자 · 손녀, 외손자 · 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을 소유(소형 · 저가주택 포함)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상속, 증여,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제외)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 · 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 · 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PC : www.apt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및 국민은행(PC : 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 · 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 1년 이상 가입자 →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본 아파트 청약시 6개월 이상 경과)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의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2018.01.02. 모집공고 승인분부터 적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함) 홈페이지(http://www.lottecastle.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가점제 적용주택의 예비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1순위 전체(기타지역 포함)경쟁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가점이 높은 자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제34조 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우선 없음)하여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주택형별 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 · 호수를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 · 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동안에 체결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 ·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은 「주택법」제63조 및 제63조의 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이며 본 아파트는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로서 「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주택법시행령」제73조제1항[별표3] 규정에 의거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전매제한이 없습니다.(단, 향후 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만, 계약금(10%)완납 후 전매가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 관련 유의사항 : 중도금 대출은 개인의 주택소유, 대출유무, 분양권 소유여부 및 정부정책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상이하며 개인별로 대출금액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불가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은 비투기과열지구,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등 대출제한이 적용됩니다. 본 아파트의 중도금(60%)대출은 이자후불제이며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및 자격가능여부 등으로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개인신용상의 문제등으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에 책임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주택)이 세대당 통합 2건 이하로 제한됩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부과,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공급계약 및 분양권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60일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당 아파트의 도면은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	당첨자발표	당첨자 사전 서류검수 (계약체결 전 서류검수 및 부적격 확인)	계약체결
일 정	2019.12.03.(화)	2019.12.04.(수)	2019.12.05.(목)	2019.12.11.(수)	2019.12.12.(목)~2019.12.19.(목)	2019.12.23.(월) ~ 2019.12.26.(목)
방 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www.apt2you.com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견본주택 방문 (서류제출 검수) (10:00 ~ 16:00)	견본주택 방문 (10:00 ~ 16:00)
장 소	•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PC에서만 가능	• 금융결제원 (국민은행외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apt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 금융결제원 (국민은행외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apt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 금융결제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PC : www.apt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 춘천 롯데캐슬 위너클래스 견본주택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 267 [구 시외버스터미널] ※ 계약체결기간 일반관람객 입장 불가	

※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에 한하여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 · 지점(09:00~16:00)에서 청약가능함 　※ 일반공급 청약의 경우 스마트폰 서비스(2018.5.28. 접수분부터 적용)가 실시 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1.01.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Ⅰ 공급 내역 및 공급 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춘천시 도시재생과 - 4709호(2019.11.27.)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강원도 춘천시 약사동 156-1번지 일원(약사촉진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0층~27층 7개동, 총 873세대 중 일반공급 660세대
[특별공급 총 280세대 : 일반(기관추천) 65세대, 다자녀가구 65세대, 신혼부부 131세대, 노부모부양 19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지하주차장의 지하층 층고 : 지하1층 3.90m, 지하2층 3.50m로 계획됨. (지하램프구간 천정고 2.3m이상 확보)

■ 내진설계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 Ⅶ입니다.

■ 입주시기 : 2022년 7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및 면적

(단위 : ㎡, 세대)

주택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소계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계	일반분양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민영주택	2019001028	01	59.9319	59	59.9319	24.1752	84.1071	33.1480	117.2551	29.5042	171	17	17	34	5	73	98	10
		02	73.3606	73	73.3606	23.2754	96.6360	40.5755	137.2115	33.8992	135	13	13	27	4	57	78	8
		03	84.5575A	84A	84.5575	25.1719	109.7294	46.7687	156.4981	38.4923	6	-	-	1	-	1	5	2
		04	84.5453B	84B	84.5453	28.8636	113.4089	46.7618	160.1707	39.7830	252	25	25	50	7	107	145	12
		05	84.8013C	84C	84.8013	27.0345	111.8358	46.9035	158.7393	39.2312	96	10	10	19	3	42	54	5
합 계											660	65	65	131	19	280	380	37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 원)

주택형 (타입)	약식표기	세대수	동호별	층 구분	세대수	공급금액 대지비	건축비	합 계	계약금(10%) 1차 계약시	2차 1차 납입후 30일 이내	1회 중도금 10% 2020.05.14	2회 중도금 10% 2020.09.14	3회 중도금 10% 2021.01.14	4회 중도금 10% 2021.07.14	5회 중도금 10% 2021.11.15	6회 중도금 10% 2022.03.14	잔금 30% 입주지정일
59.9319	59	163	104동(6,7호) 105동(1,2호) 106동(1,2호) 107동(1,2호)	1	1	39,978,191	181,021,809	221,000,000	10,000,000	12,100,000	22,100,000	22,100,000	22,100,000	22,100,000	22,100,000	22,100,000	66,300,000
				2	8	39,978,191	187,021,809	227,000,000	10,000,000	12,700,000	22,700,000	22,700,000	22,700,000	22,700,000	22,700,000	22,700,000	68,100,000
				3	8	39,978,191	192,021,809	232,000,000	10,000,000	13,200,000	23,200,000	23,200,000	23,200,000	23,200,000	23,200,000	23,200,000	69,600,000
				4	8	39,978,191	197,021,809	237,000,000	10,000,000	13,700,000	23,700,000	23,700,000	23,700,000	23,700,000	23,700,000	23,700,000	71,100,000
				5~9	34	39,978,191	202,021,809	242,000,000	10,000,000	14,200,000	24,200,000	24,200,000	24,200,000	24,200,000	24,200,000	24,200,000	72,600,000
				10~19	80	39,978,191	205,021,809	245,000,000	10,000,000	14,500,000	24,500,000	24,500,000	24,500,000	24,500,000	24,500,000	24,500,000	73,500,000
				20~	24	39,978,191	207,021,809	247,000,000	10,000,000	14,700,000	24,700,000	24,700,000	24,700,000	24,700,000	24,700,000	24,700,000	74,100,000
		8	104동(1,2호)	2	2	39,978,191	192,021,809	232,000,000	10,000,000	13,200,000	23,200,000	23,200,000	23,200,000	23,200,000	23,200,000	23,200,000	69,600,000
				3	2	39,978,191	197,021,809	237,000,000	10,000,000	13,700,000	23,700,000	23,700,000	23,700,000	23,700,000	23,700,000	23,700,000	71,100,000
				4	2	39,978,191	202,021,809	242,000,000	10,000,000	14,200,000	24,200,000	24,200,000	24,200,000	24,200,000	24,200,000	24,200,000	72,600,000
				5	2	39,978,191	207,021,809	247,000,000	10,000,000	14,700,000	24,700,000	24,700,000	24,700,000	24,700,000	24,700,000	24,700,000	74,100,000
73.3606	73	97	101동(1,2호) 105동(6,7호)	1	1	45,933,416	212,066,584	258,000,000	10,000,000	15,800,000	25,800,000	25,800,000	25,800,000	25,800,000	25,800,000	25,800,000	77,400,000
				2	4	45,933,416	219,066,584	265,000,000	10,000,000	16,500,000	26,500,000	26,500,000	26,500,000	26,500,000	26,500,000	26,500,000	79,500,000
				3	4	45,933,416	225,066,584	271,000,000	10,000,000	17,100,000	27,100,000	27,100,000	27,100,000	27,100,000	27,100,000	27,100,000	81,300,000
				4	4	45,933,416	231,066,584	277,000,000	10,000,000	17,700,000	27,700,000	27,700,000	27,700,000	27,700,000	27,700,000	27,700,000	83,100,000
				5~9	20	45,933,416	236,066,584	282,000,000	10,000,000	18,200,000	28,200,000	28,200,000	28,200,000	28,200,000	28,200,000	28,200,000	84,600,000
				10~19	40	45,933,416	239,066,584	285,000,000	10,000,000	18,500,000	28,500,000	28,500,000	28,500,000	28,500,000	28,500,000	28,500,000	85,500,000
				20~	24	45,933,416	242,066,584	288,000,000	10,000,000	18,800,000	28,800,000	28,800,000	28,800,000	28,800,000	28,800,000	28,800,000	86,400,000
		38	102동(5,6호) 103동(1,2호)	1	2	45,933,416	217,066,584	263,000,000	10,000,000	16,300,000	26,300,000	26,300,000	26,300,000	26,300,000	26,300,000	26,300,000	78,900,000
				2	4	45,933,416	224,066,584	270,000,000	10,000,000	17,000,000	27,000,000	27,000,000	27,000,000	27,000,000	27,000,000	27,000,000	81,000,000
				3	4	45,933,416	231,066,584	277,000,000	10,000,000	17,700,000	27,700,000	27,700,000	27,700,000	27,700,000	27,700,000	27,700,000	83,100,000
				4	2	45,933,416	236,066,584	282,000,000	10,000,000	18,200,000	28,200,000	28,200,000	28,200,000	28,200,000	28,200,000	28,200,000	84,600,000
				5~9	4	45,933,416	242,066,584	288,000,000	10,000,000	18,800,000	28,800,000	28,800,000	28,800,000	28,800,000	28,800,000	28,800,000	86,400,000
				10~19	14	45,933,416	245,066,584	291,000,000	10,000,000	19,100,000	29,100,000	29,100,000	29,100,000	29,100,000	29,100,000	29,100,000	87,300,000
				20~	6	45,933,416	246,066,584	292,000,000	10,000,000	19,200,000	29,200,000	29,200,000	29,200,000	29,200,000	29,200,000	29,200,000	87,600,000
84.5575 A	84A	6	103동(5,6호)	1	1	52,157,067	253,042,933	305,200,000	10,000,000	20,520,000	30,520,000	30,520,000	30,520,000	30,520,000	30,520,000	30,520,000	91,560,000
				2	2	52,157,067	259,042,933	311,200,000	10,000,000	21,120,000	31,120,000	31,120,000	31,120,000	31,120,000	31,120,000	31,120,000	93,360,000
				3	1	52,157,067	266,042,933	318,200,000	10,000,000	21,820,000	31,820,000	31,820,000	31,820,000	31,820,000	31,820,000	31,820,000	95,460,000
				4	2	52,157,067	273,042,933	325,200,000	10,000,000	22,520,000	32,520,000	32,520,000	32,520,000	32,520,000	32,520,000	32,520,000	97,560,000
84.5453 B	84B	104	105동(3,4호) 106동(3,4호)	1	2	53,905,965	238,094,035	292,000,000	10,000,000	19,200,000	29,200,000	29,200,000	29,200,000	29,200,000	29,200,000	29,200,000	87,600,000
				2	4	53,905,965	244,094,035	298,000,000	10,000,000	19,800,000	29,800,000	29,800,000	29,800,000	29,800,000	29,800,000	29,800,000	89,400,000
				3	4	53,905,965	251,094,035	305,000,000	10,000,000	20,500,000	30,500,000	30,500,000	30,500,000	30,500,000	30,500,000	30,500,000	91,500,000
				4	4	53,905,965	257,094,035	311,000,000	10,000,000	21,100,000	31,100,000	31,100,000	31,100,000	31,100,000	31,100,000	31,100,000	93,300,000
				5~9	20	53,905,965	264,094,035	318,000,000	10,000,000	21,800,000	31,800,000	31,800,000	31,800,000	31,800,000	31,800,000	31,800,000	95,400,000
				10~19	40	53,905,965	267,094,035	321,000,000	10,000,000	22,100,000	32,100,000	32,100,000	32,100,000	32,100,000	32,100,000	32,100,000	96,300,000
				20~	30	53,905,965	270,094,035	324,000,000	10,000,000	22,4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97,200,000
		148	101동(3,4호) 102동(2,3호) 103동(3,4호) 104동(3,4호)	1	4	53,905,965	244,094,035	298,000,000	10,000,000	19,800,000	29,800,000	29,800,000	29,800,000	29,800,000	29,800,000	29,800,000	89,400,000
				2	8	53,905,965	250,094,035	304,000,000	10,000,000	20,400,000	30,400,000	30,400,000	30,400,000	30,400,000	30,400,000	30,400,000	91,200,000
				3	8	53,905,965	257,094,035	311,000,000	10,000,000	21,100,000	31,100,000	31,100,000	31,100,000	31,100,000	31,100,000	31,100,000	93,300,000
				4	8	53,905,965	263,094,035	317,000,000	10,000,000	21,700,000	31,700,000	31,700,000	31,700,000	31,700,000	31,700,000	31,700,000	95,100,000
				5~9	33	53,905,965	270,094,035	324,000,000	10,000,000	22,4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32,400,000	97,200,000
				10~19	59	53,905,965	274,094,035	328,000,000	10,000,000	22,800,000	32,800,000	32,800,000	32,800,000	32,800,000	32,800,000	32,800,000	98,400,000
				20~	28	53,905,965	277,094,035	331,000,000	10,000,000	23,100,000	33,100,000	33,100,000	33,100,000	33,100,000	33,100,000	33,100,000	99,300,000
84.8013 C	84C	87	101동(5호) 102동(1호) 104동(5호) 105동(5호)	1	4	53,158,276	245,841,724	299,000,000	10,000,000	19,900,000	29,900,000	29,900,000	29,900,000	29,900,000	29,900,000	29,900,000	89,700,000
				2	4	53,158,276	251,841,724	305,000,000	10,000,000	20,500,000	30,500,000	30,500,000	30,500,000	30,500,000	30,500,000	30,500,000	91,500,000
				3	4	53,158,276	258,841,724	312,000,000	10,000,000	21,200,000	31,200,000	31,200,000	31,200,000	31,200,000	31,200,000	31,200,000	93,600,000
				4	4	53,158,276	264,841,724	318,000,000	10,000,000	21,800,000	31,800,000	31,800,000	31,800,000	31,800,000	31,800,000	31,800,000	95,400,000
				5~9	16	53,158,276	271,841,724	325,000,000	10,000,000	22,500,000	32,500,000	32,500,000	32,500,000	32,500,000	32,500,000	32,500,000	97,500,000
				10~19	38	53,158,276	275,841,724	329,000,000	10,000,000	22,900,000	32,900,000	32,900,000	32,900,000	32,900,000	32,900,000	32,900,000	98,700,000
				20~	17	53,158,276	278,841,724	332,000,000	10,000,000	23,200,000	33,200,000	33,200,000	33,200,000	33,200,000	33,200,000	33,200,000	99,600,000
		9	102동(4호)	1	1	53,158,276	251,841,724	305,000,000	10,000,000	20,500,000	30,500,000	30,500,000	30,500,000	30,500,000	30,500,000	30,500,000	91,500,000
				2	1	53,158,276	257,841,724	311,000,000	10,000,000	21,100,000	31,100,000	31,100,000	31,100,000	31,100,000	31,100,000	31,100,000	93,300,000
				3	1	53,158,276	264,841,724	318,000,000	10,000,000	21,800,000	31,800,000	31,800,000	31,800,000	31,800,000	31,800,000	31,800,000	95,400,000
				4	1	53,158,276	271,841,724	325,000,000	10,000,000	22,500,000	32,500,000	32,500,000	32,500,000	32,500,000	32,500,000	32,500,000	97,500,000
				5~9	1	53,158,276	278,841,724	332,000,000	10,000,000	23,200,000	33,200,000	33,200,000	33,200,000	33,200,000	33,200,000	33,200,000	99,600,000
				10~19	2	53,158,276	281,841,724	335,000,000	10,000,000	23,500,000	33,500,000	33,500,000	33,500,000	33,500,000	33,500,000	33,500,000	100,500,000
				20~	2	53,158,276	284,841,724	338,000,000	10,000,000	23,800,000	33,800,000	33,800,000	33,800,000	33,800,000	33,800,000	33,800,000	101,400,000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본 아파트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이므로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주택형 표시안내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59.9319	73.3606	84.5575A	84.5453B	84.8013C
견본주택 등 약식표기	59	73	84A	84B	84C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달로그 /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공통유의사항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접수 받아 동 · 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함.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형 표기방식을 주거전용면적으로 표기했으며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람.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기타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되어 있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 별 지하주차장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설치비용은 미포함 되어 있으며 주택당첨자가 분양계약 시 선택이 가능한 사항임. 또한, 발코니 확장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 확장(일부 발코니, 주방 발코니, 대피공간 등은 제외)기준으로 시공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상기 공급 금액에는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등)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분양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계약 이후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 가능함.
-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이 경우 정산규정은 공급계약서에 따름)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인 · 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함.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함.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단, 이로 인한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입(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분양가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은 해당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당 사업장의 계약금, 중도금 납입일정 및 입주예정시기는 공사진척상황(공정률)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납부일이 휴일 및 법정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연체료 납부시 토 · 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계약자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한 중도금 대출 신청에 한하여 중도금대출이자는 입주지정일(입주개시일)전일까지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서 대납함.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금융기관 확정 후 별도 공지 및 안내예정임.(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대출부적격 사유 등으로 인해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
- 중도금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경비는 분양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 및 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개별 통보하지 아니하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되며 대출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 본 아파트 개발사업의 시행사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함.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업주체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사용검사(동별 사용승인이 포함됨) 이후에 받으며 입주(열쇠 불출)전에 완납하여야 함. 단, 임시 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음.(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할시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분양대금 중 선납한 금액 및 대금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고,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며 선납금액은 선납일수에 따른 선납할인이 적용 됨.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고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함.
-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에 의거 입주개시 전 도장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안내할 예정임.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모든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 함.
- 본 주택은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업주체로 변경되는 것으로 간주함. 또한, 본 아파트 개발사업의 시행사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함.
- 분양대금채권의 양도 등과 관련해 약사촉진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시행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관련 표준사업 약정서 체결과 동시에 장래에 발생할 약사촉진3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의 분양대금채권(조합원 및 일반분양 수입금을 포함함)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함. 약사촉진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시행자)은 분양계약 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므로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함.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계약자 본인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사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Ⅱ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59	73	84A	84B	84C	합 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등		3	2	-	4	2	11
	장애인		3	3	-	5	3	14
	장기복무 제대군인		3	2	-	4	2	11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3	2	-	4	2	11
	중소기업근로자		3	2	-	4	1	10
	북한이탈주민		2	2	-	4	-	8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17	13	-	25	10	65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우선공급(75%)	26	21	1	38	15	101
		일반공급(25%)	8	6	-	12	4	30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5	4	-	7	3	19
합계			73	57	1	107	42	280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상기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 지역인 춘천시 3개월 이상 거주자가 우선함. 단,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은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함.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 분	내 용
1회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1세대내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1인만 청약신청 가능,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세대주 한정)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주 한정)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예비포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계약체결불가,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며,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제한]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기준)) - 기관추천 특별공급 / 다자녀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 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 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자 ①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①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춘천시 / 강원도	기타광역시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중복청약 및 당첨시 처리기준	
공통사항	- 특별공급은 1세대 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부적격당첨자로 처리) -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부적격당첨자로 처리)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특별공급별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 분	신청자격	당첨자 선정방법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대상으로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단,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 • 신청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추천기관 ①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제대군인 : 강원서부보훈지청 복지팀 ②장애인 : 강원도청 경로장애인과 ③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방부 국군복지단 ④중소기업근로자 : 강원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⑤북한이탈주민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	•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대상자(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신청하여야 하며, 노약자 · 인터넷 취약자만 견본주택 방문신청 가능함(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 호 배정 및 계약 불가) • 사업주체에 최종 통지된 대상자는 통지시 기재된 주택형으로 인터넷 특별공급 접수기관(금융결제원)에 신청내역을 등록함에 따라 주택형 변경 등 추천내역과 상이하게 신청 시 당첨자 선정이 불가함. • 기관에서 선정한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추가당첨(접수미달 주택형 한정)또는 통합 예비입주자로의 확정은 아니며, 특별공급 추가당첨 또는 통합 예비입주자 추첨대상에 포함되어 추첨결과에 따라 추가 당첨 및 통합 예비입주자로 선정 또는 낙첨될 수 있음. • 당첨자 선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함.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춘천시 3개월 이상 거주)신청자 또는 기타지역(춘천시 3개월 미만 거주, 춘천시 외 강원도)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직계자녀 3명(태아, 입양자녀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자녀3명 이상이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하며,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자녀에는 임신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단, 임신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입양관계증명서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시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취소됨) - 이혼의 경우 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 포함하고, 재혼의 경우 신청자의 전혼 자녀는 신청자 또는 세대분리된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경우에 해당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춘천시 3개월 이상 거주자) 신청자가 기타지역(춘천시 3개월 미만 거주자, 춘천시 외 강원도)거주자보다 우선함. •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순서로 선정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춘천시 3개월 이상 거주) 또는, 기타지역(춘천시 3개월 미만 거주, 춘천시 외 강원도)에 거주하면서 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를 말함)이하인 자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임신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로 확인, 출산은 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일 기준,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 함. - 임신의 경우 청약신청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 · 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우선공급 소득 대상자는 100%이하) - 입양의 경우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 증명서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 - 2018.12.11. 단,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름.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에게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함. • 선정기준 : 우선공급(소득기준) —> 공급순위 —> 거주지역 —> 자녀수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다음 순서에 따라 순위를 정함. (1)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자(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2)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현재 배우자와 무자녀인 경우 또는 2018.12.11.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같은 순위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함. (1)해당 주택건설지역 (춘천시 3개월 이상 거주 우선)신청자 (2)미성년인 자녀수가 많은 자(태아를 포함) (3)미성년 자녀수(태아를 포함)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된 자 ※상기 미성년 자녀수를 산정할 때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이 아닌 경우를 말함)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는 포함(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이면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산정함. 단,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포함 됨.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 · 낙태 관련 진단서 등)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춘천시 3개월 이상 거주) 또는, 기타지역(춘천시 3개월 미만거주, 춘천시 외 강원도)에 거주하면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보는 조항은 해당 특별공급에 적용되지 아니 함. ※소형 ·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름.	• 같은 순위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함. (1)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춘천시 3개월 이상 거주자)신청자가 기타지역(춘천시 3개월 미만 거주자, 춘천시 외 강원도 지역(기타지역)거주자보다 우선 (2)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가점제 점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의 청약가점산정기준표로 산정함. ※특별공급 신청시, 청약가점 산정 기준표를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며 기재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신청시 배점표에 자필작성 및 점수기재)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기준	점수	비 고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 · 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 ·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 경기 · 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 · 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 · 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 2018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공급유형		구 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기준소득,7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월평균 소득기준 100% 이하	5,401,814원 이하	6,165,202원 이하	6,699,865원 이하	7,348,891원 이하	7,997,917원 이하	8,646,943원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월평균 소득기준 120% 이하	6,482,177원 이하	7,398,242원 이하	8,039,838원 이하	8,818,669원 이하	9,597,500원 이하	10,376,332원 이하
일반공급 (상위소득,2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120%이하	5,401,815원 ~6,482,177원 이하	6,165,203원 ~7,398,242원 이하	6,699,866원 ~8,039,838원 이하	7,348,892원 ~8,818,669원 이하	7,997,918원 ~9,597,500원 이하	8,646,944원 ~10,376,332원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30%이하	6,482,178원 ~7,022,358원 이하	7,398,243원 ~8,014,763원 이하	8,039,839원 ~8,709,825원 이하	8,818,670원 ~9,553,558원 이하	9,597,501원 ~10,397,292원 이하	10,376,333원 ~11,241,026원 이하

(표 머리: 2018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기준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상위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49,026)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으로 하되,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자인 직계존 · 비속도 세대원으로 간주함.(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명상의 과세 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상의 근무 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①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 · 비속 ②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 · 비속(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 · 비속포함)]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 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는 전년도 계속하여 직장에 근무, 공급신청자의 배우자는 금년도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청하시기 바람.
- 전년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인 경우, 전년도 정상적인 소득과 근무개월수 및 출산휴가 기간(고용보험가입이 되어 있으면 소득합산)합산하여 전년도 월평균 소득을 산정 함.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 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함.
- 신청자 명의로 사업자(법인)등록되어 있으면서 본인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서상의 사업소득이 법인인감이 날인된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조서 등)로 근로소득을 확인한 후 두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함.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
1.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2.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3.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4.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5.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6.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 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신혼부부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각서(견본주택에 비치)	- 접수장소

•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타 유의사항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양자격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이 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입주가 가능함.
-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공급계약)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분양권 전매 요청 시 입양자격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양자격이 유지되고 있다고 사업주체가 판단하는 경우에만 분양권 전매 요청을 접수함] 　• 임신의 경우 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 · 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분양권전매 요청 시 임신자격이 유지(또는 출산)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신자격이 유지(또는 출산)되고 있다고 사업주체가 판단하는 경우에만 분양권 전매 요청을 접수함]
-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출산은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등본으로 판단하며, 양자의 경우 입양신고일이 적용 됨.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함.
-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름.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및 유의사항
-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시 해당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며 사업주체는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착오 안내 등의 혼동 방지를 위해 응답하지 않으니 양해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인터넷 접수에 따라 특별공급 서류접수는 당사에서 지정하는 날에 맞추어 제출하셔야 함.
- 당첨자 선정 및 동 · 호수 배정업무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함.(동 · 호 배정 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 발생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 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 · 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함. (동 · 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함.)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APT2you)을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접수(견본주택)가 가능함.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음. 　• 인터넷 청약(APT2you)의 경우 서류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며 방문접수(견본주택)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함.
-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시 둘 다 무효처리 됨.
- 1세대 무주택구성원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세대주만 가능)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예비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 됨. 　•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류 제출 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분리세대 등)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인터넷 청약 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특별공급 청약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 ·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시에는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함.
※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APT2you앱, KB스타뱅킹 앱)으로 청약하신 분은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조회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9.11.28) 현재 춘천시 및 강원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성년자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단, 미성년자 중 자녀를 양육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청약이 가능함) 　• 동일 순위 신청자 중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춘천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신청자가 춘천시 3개월 미만 계속 거주자 및 강원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춘천시 3개월 미만 계속 거주자 및 강원도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본 주택은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과거 당첨사실이 있어도 청약이 가능함.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판단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9.11.28)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일반공급 주택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로 처리함.
- 순위별 신청자격 제한이 있으므로 아래 '순위별 자격요건'에서 본인의 신청순위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됨.
- 본 주택에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계좌로 재사용할 수 없으며, 당첨자로 관리 됨.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 청약과열지역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함. 　•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지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됨. 다만, 수도권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경기도)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인정 됨. 또한,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 됨. (1순위 및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시 청약가능) 　• 본 주택의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의거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0조제1항 별표2)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춘천시 / 강원도	기타 광역시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5.12.29)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0조제1항 별표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예금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 순위별 자격요건

구 분	순 위	신청구분	신청자격 및 청약 관련 예금	거주구분
민영 주택	1 순위	전 주택형	- 전용면적 85㎡이하 : 가점제 40%, 추첨제 60% 적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9.11.28)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1)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이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2)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3)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 납입인정금액이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4)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입주자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하여야 함.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람.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 발표일이 2017.10.18.이후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춘천시 / 강원도
	2 순위		- 추첨제 100% 적용 　-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춘천시 및 강원도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 19세 이상인 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 · 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 일반공급 청약 유의사항
-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아야 함. 　•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지역을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함.(단, 차액을 감액 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시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 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신청을 하여야 함. 　• 청약시 신청자의 착오 등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전 확인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람.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APT2you앱, KB스타뱅킹 앱)으로 청약하신 분은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조회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조회하시기 바람.

■ 신청일정 및 장소 ※ 일반공급 청약의 경우 스마트폰 서비스(2018.05.28. 접수분부터 적용)가 실시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람.

구 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거주구분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부양	• 2019.12.03.(화) (apt2you : 08:00~17:30) (견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APT2you)	• 금융결제원 사이트(www.apt2you.com – 국민은행 가입자 포함) • 견본주택 –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한정 춘천롯데캐슬 위너클래스 견본주택(춘천시 근화동 267번지)	춘천시, 강원도
일반공급	1순위	• 2019.12.04.(수) (08:00~17:30)	• 인터넷 청약 (APT2you)	• 1순위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www.apt2you.com)	
	2순위	• 2019.12.05.(목) (08:00~17:30)		• 2순위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www.apt2you.com)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아파트 투유(www.apt2you.com)인터넷 청약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허용됨. (방문접수시간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 · 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함. 　※ 일반공급 참가은행(15개) : 기업, 국민, KEB하나,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신한은행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기준으로 17:30 이전에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시 은행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및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는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함.

금융결제원(全 은행 청약자_국민은행 제외)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국민은행(국민은행 청약자) – 일반공급만 해당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APT청약신청」⇒「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일반공급 스마트폰 청약시] APT2you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아파트투유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APT청약신청」⇒「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일반공급 PC 청약시]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특화서비스「주택청약」⇒「인터넷청약」⇒「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일반공급 스마트폰 청약시] KB스타뱅킹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KB스타뱅킹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전체메뉴 – 청약/채권 – 신청」⇒「주택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청약자격(거주 개시일) 기재방법 : 거주개시일(KB국민은행 가입자만 해당)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9.11.28.) 현재 주민등록표등 · 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단위)의 전입일을 기재

■ 노약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신청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인터넷 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
- 청약 접수 방법 : 청약 접수 당일 아래 구비사항을 준비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 청약 접수(청약접수 가능시간 09:00~16:00)

구 분		구비사항
일반공급	본인 신청시	• 주택공급 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 · 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그 외 구비사항은 생략하오니 직접 문의하시기 바람.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여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1순위 / 2순위 청약접수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만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청약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신청을 하여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최하층 주택 우선 배정신청(고령자, 장애인,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에 한함)
※ 금회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녀를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하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최하층(1층) 주택공급세대수는 주택형별 층별 공급세대수를 참조하시기 바람.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1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1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향후 자격입증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계약체결 불가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주택형의 경우 공급주택 중 최하층을 말함.(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

구 분	최하층 우선배정 안내
신청자격	청약신청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중 아래 ①~③에 해당하는 분 중 (최하층) 주택 희망자 ①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에 속한 만65세 이상인 자 　②「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세대에 속한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중증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③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입양을 포함)를 둔 분 　※ 경쟁시 ①,②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우선하여 배정
신청방법	*특별공급 신청자 :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로 정해진 신청일자에 인터넷 청약하여 신청하고, 자격입증서류 및 최하층(1층)주택 우선배정 신청서(별도 양식)를 제출해야 함. *일반공급 신청자 : 희망자는 인터넷청약시 최하층(1층)우선배정을 선택하여 신청하고, 당첨자 서류제출시 자격입증 서류 및 최하층(1층)주택 우선 배정 신청서(별도 양식)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자격입증서류 ①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②번 해당자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등 ③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2호

구 분	내 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소형 · 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1일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1일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중 2007년 9월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목에서 같다)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 미혼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 기준 및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2호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 미만 (무주택자에 한함)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 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 ·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청약자가 배우자 및 자녀와 주민등록상 분리 부양가족수 산정) -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 개정일(2018.12.11) 이후 분양권 · 입주권을 계약한 직계존속(배우자포함)은 가점산정시 부양가족으로 보지 아니함.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총 점	84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 제28조 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됨.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임.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세대원 포함)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는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기간(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및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직계존비속 및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1) 건물등기부 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 등본 : 처리일.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한 자는 제외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특별공급은 주택소유로 봄)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하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소형 · 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소형 · 저가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소유에 대해 다음 구분에 따라 산정함.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③ 분양권 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해당 소형 · 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 함.
※ 소형 · 저가주택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 신청 시에는 소형 · 저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1순위 당첨자 중 계약체결 후에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부적격 당첨자 소명기간 이후부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3항에 의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로 해당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일정기간(7일)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4항) 　①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대하여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①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②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③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 ·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④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함.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Ⅳ 입주자 선정방법 및 유의사항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 · 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 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 · 호수를 결정함.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함.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4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함.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함.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전용면적대별 1순위는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 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 · 호수를 결정함.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 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순위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 함.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춘천시 3개월 이상 거주 신청자가 춘천시(3개월 미만 거주) 및 강원도 지역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함.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1순위 전체(기타지역 포함)경쟁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가점이 높은 자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우선 없음)하여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주택형별 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함.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 · 호수를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함. (동 · 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APT2you)을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접수(견본주택)가 가능함. • 인터넷 청약(APT2you)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서류제출 시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방문접수(견본주택)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함.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음.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 ·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시 둘 다 무효처리 됨. •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이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규칙 제47조)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음.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입주자 선정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 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 ·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 ·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함.

Ⅴ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 · 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당첨자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일시 : 2019.12.11.(수) • 확인방법 : 아파트 투유(www.apt2you.com) 또는 APT2you앱에서 개별조회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 일시 　- 2019.12.23.(월) ~ 2019.12.26.(목) (10:00 ~ 16:00) • 장소 　- 춘천 롯데캐슬 위너클래스 견본주택(춘천시 근화동 267번지)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 · 호수 확인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람.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람.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및 계약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 체결 함.(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 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당첨취소 됨.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함. 　※ 당첨자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함. 　※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 · 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 됨.(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 됨)
※ 당첨자 및 동 · 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예비당첨자는 당첨자 추첨시 금융결제원에서 자동으로 추첨되며, 정당당첨자 계약 이후 미계약세대에 한해 추첨 후 계약이 가능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 · 호수와 미계약 동 · 호수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 동 · 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 예비입주자가 된 경우 특별공급을 우선하여 배정(둘 중 선택 불가)하고 특별공급으로 배정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는 무효 처리하며, 특별공급 예비물량이 모두 소진되어 추첨기회가 소진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 지위를 인정함.

■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 당첨자 발표 서비스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홈페이지(www.lottecastle.co.kr)등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바람.

구 분		국민은행(국민은행 청약자)	금융결제원(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19.12.11 ~ 2019.12.20.(10일간)	
인 터 넷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KB부동산 → 주택청약 → 당첨확인 – KB스타뱅킹 앱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전체메뉴 – 조회」 ⇒「청약당첨사실 주택별조회」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APT2you 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전화(ARS)		전화 1588–9999(서비스코드 9–1–3)	서비스 종료
휴대폰 문자서비스	제공대상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특별공급 제외)	
	제공일시	2019.12.11.(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은 국민은행에서 별도 서비스 제공	

※ 금융결제원 ARS(국번없이 1369)서비스는 2017.6.15.자로 종료되었으며,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함.
※ 부정확한 당첨내역 조회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공급 및 1,2순위 당첨조회시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을 통한 당첨조회가 불가하오니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통해 당첨여부를 조회하시기 바람.

■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제출 및 유의사항
공급유형 또는 당첨유형에 따라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기한까지 당사 견본주택으로 제출하여야 함.

제출기한	제출대상	제출장소	유의사항
2019.12.12.(목)~2019.12.19.(목) 10:00~16:00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당첨자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 267번지 ☎ 1811 – 8855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이상에 해당하는 자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진동 등을 포함)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변경 포함)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사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세대"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당첨자를 판명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 될 수 있음.
– 계약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된 통장은 재사용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계약체결 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됨.

■ 특별공급 구비서류 (계약체결 전 당첨자 자격확인시 제출서류)

구 분	서류유형 필수	서류유형 추가(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서류	O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본인	견본주택 비치(인터넷청약(APT2you)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무주택 세대주 입증서류(무주택 서약서로 대체)
	O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대리인 불가),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본인 발급용)
	O		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시는 제출 생략
	O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O		주민등록표등본(상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청약통장순위확인서		청약통장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 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서비스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www.apt2you.com)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 확인서 발급(단, 국가유공자, 장애인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인터넷 청약(APT2you)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O		출입국사실증명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O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배우자분리세대에 한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일자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일반 (기관추천)		O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명부로 확인(인터넷 청약의 방법으로 청약한 경우 생략)
		O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본인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다자녀 특별공급		O	피부양자의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등본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세부내역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받은 서류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출산예정일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O	출산이행각서		견본주택 비치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의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자녀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상세"로 발급
		O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만30세 미만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받은 서류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출산예정일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O	출산이행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중인 경우, 견본주택 비치
		O	기본증명서	자녀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O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견본주택 비치(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O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신청자의 성년인 직계존 · 비속 전원) (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O		소득증빙서류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신청자의 성년인 직계존 · 비속의 소득입증서류)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FAX 수신문서 등 복사본 접수 불가, 서류접수시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O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 · 비속	신청자와 피부양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3년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 추가 증빙용 신청자와 만30세 이상의 직계비속(미혼인 경우 한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 추가 증빙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세부내역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 · 비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직계비속	만30세 미만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O		인감증명서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O		인감도장	청약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계약 위임시는 제출 생략
	O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 비치
	O		신분증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등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O		인장	대리인	

※ 상기 모든 증명서류(계약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9.11.28)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또한,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할 경우, 계약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계약시 외국인의 구비서류는 공급신청시 구비서류와 동일함)
※ 주민등록표등 · 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초본 1통 필요함.
※ 재외동포는 재외국민 주민등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통) ※ 추후, 계약 시 계약구비서류 변경 또는 추가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별도 안내할 예정임.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체결 시 대리인 방문이 불가하며 본인이 방문하여야 함. ※ 거주지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서류만 인정함.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전산검색 등 청약자격 유무 판단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제출함으로써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해 계약 체결함, 미체결시 계약이 취소됨.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고, 당첨된 청약 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당첨자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소명할 경우 제외) 부적격 당첨자로 판정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이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 –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용을 허위 또는 착오로 기재한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당첨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상기 기준에 따라 주택소유여부 판단 및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사실 유무 판단 시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및 당첨 사실을 포함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기 동일한 청약관련예금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이미 체결된 계약은 취소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 절취,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자는 공급질서 교란자로 당첨을 취소하고 고발조치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예금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당첨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함.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중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체결로 인정하지 않으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계약시 체결된 건물의 공급면적 및 대지 공유지분은 공부정리 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경우에 계약상의 공급면적과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함. 단,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인한 면적 증감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음.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및 아파트의 배치구조 및 동 ·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 조망권 및 소음 ·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진동 등을 포함) 등으로 생활환경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명칭 및 동 · 호수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 시 이를 제기하지 아니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며,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을 공개한 후, 동 · 호 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함.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음.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변심,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함.
• 발코니확장 계약체결을 미선택한 세대에 한하여 사업주체가 제공하는 서비스품목 제공혜택을 받을 수 없음. •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선택하는 마감재 선택사항 및 발코니확장 계약, 플러스옵션 계약은 변경이 불가하며, 공사에 착수하거나 별도품목 상품을 제작업체에 주문 또는 발주할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으며 이점 유념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람.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 분양계약서 및 계약시구비서류를 준용함.
• 사업주체가 마감자재업체의 선정 및 시공 상의 고려 등의 사유로 계약자가 계약 시 선택한 마감자재의 선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계약자에게 통지하기로 하며, 이 경우 통지의 방법 및 효과 등은 분양계약서를 준용함 이 때, 계약자가 사업주체의 위 통지를 수령하거나 또는 수령 간주된 후 2주내에 사업주체에 대하여 서면으로써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자가 마감자재 등 선택사항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봄.

■ 계약시 구비서류 안내

구 분	서류유형 필수	서류유형 추가(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공 통	O		본인확인증표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직접 계약시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 / 용도 : 공동주택계약용(본인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성명,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O		주민등록표등본(상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성명,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상세)		–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계약금 입금 영수증		– 입금시 계약자 성명 및 동–호수 기재
		O	복무확인서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으로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군복무기간 10년 이상 명시]
		O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아파트투유(www.apt2you.com)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특별공급 제외)※인터넷청약신청자는 제출 생략
일반공급 (가점제 당첨자)		O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피부양 배우자가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이혼,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및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피부양직계존속 직접 발급 요함]
		O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30세 이상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피부양 직계비속 직접 발급 요함]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만30세 미만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제3자 대리인 계약 추가사항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용도 :공동주택계약 위임용(본인 발급)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록자는 대리 신청 불가
	O		위임장	본인	– 견본주택에 비치
	O		본인확인증표 및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O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O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O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건축물대장,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원 등)
		O			– 기타 무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O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상기 제출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시 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시 구비서류와 동일함) ※ 본인 계약시 모두 제3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간주함.
※ 주민등록표등 · 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 고
계약금 납부계좌	국민은행	681101–01–453300	약사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롯데)	입금시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ex) 101동 101호 홍길동 : 1010101 홍길동
2차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계좌	국민은행	681101–01–453313	약사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롯데)	계약자별 가상계좌 별도 안내

• 분양대금 계좌는 상기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계약금 납부 :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시 제출하여야 함. (견본주택에서 현금 수납등 불가)
• 2차 계약금 납부 : 2차 계약금을 약정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할 때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또한, 계약금(10%) 완납 후 전매가 가능하오니 유의 하시기 바람.
• 중도금 및 잔금납부 :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하여야 함. • 지정된 분양대금(중도금,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무통장 입금시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예: 102동503호 홍길동 →1020503홍길동)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음.
•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과 관련한 계약금 및 중도금 · 잔금 납부계좌는 상기의 분양대금 납부계좌와는 다르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지정된 분양대금 납부일(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당사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받으며 계약자가 은행 창구에서 현장수납 등으로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일체 책임지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함.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본 주택의 중도금은 당사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 승인 시,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음.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현금 납부하여야 함.) • 사업주체는 상기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에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자에게 서면통지하기로 하며, 이 경우 잔여 분양대금은 변경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만일 계약자의 계약서상의 주소지가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 후 1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서면(주민등록등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함. • 사업주체는 각 분양대금의 납부기일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공급계약서에 따른 연체료가 가산됨.
• 만일, 분양대금을 과오납할 경우, 당사로 환불신청서(당사양식) 및 구비서류(입금확인증, 통장사본, 신분증 등)를 제출하여야하며, 제출일로부터 30일이내 환불 예정임.

■ 중도금 납부 및 대출 알선 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공지 및 안내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자는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여부 반드시 확인)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10%(계약금)완납 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나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초과, 각종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으로 대출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른 대출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자는 분양대금(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함.
• 사업주체가 지정하지 않은 대출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대납이 불가하므로 계약자가 대출이자를 해당 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2차 계약금 미납 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중도금 대출이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 등 에서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시 사업주체 등에서 지정한 입주기간내 대납이자를 일시 납부하여야 함.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입주가 거부되며,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를 부담하여야 함) •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대출용 자금에 대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일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 등이 대납하며, 변경된 입주지정일 최초로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함.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금은 사업주체, 시공사 및 중도금 대출기관과 체결되는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하여 사업주체가 지정한 중도금 대출기관에서 중도금 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 기간은 사업주체 등이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로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사업주체 등이 부담(납부)하며 (단, 사업주체가 지정한 중도금 대출기관의 중도금 대출이자만 해당하며, 관련정책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비율을 제한받아 계약자가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한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는 해당하지 않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로부터 발생한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므로 중도금 대출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함.
•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 시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받는 것에 동의하며(개별 금융기관 지정 불가함),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발생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음.
• 계약자 개인 신용 등 사유로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대출은행에서 중도금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중도금 납부 회차에 맞추어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함.(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특히 청약 접수 전 본인의 신용상태 및 대출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제반 경비(보증수수료, 인지대 등)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본인이 직접 납부(이 경우 사업주체는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미납 시 연체료 가산됨.) 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주장 할 수 없음.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사항(대출취급기관, 대출금액, 대출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음.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 지정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아파트는「주택법」제57조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이며,「주택법」제64조제1항 및「주택법시행령」제73조제1항[별표3] 규정에 의거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전매제한이 없음. (단, 향후 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함.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문제에 대하여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이 책임짐. (전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관계법령의 제, 개정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음)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관계(미납대금, 연체료 등)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함. •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기관으로부터 위 표시 부동산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자는 전매 시 해당 대출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간의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한 후 상환영수증을 즉시 제출하여야 함.
• 전매자간 작성(합의)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 상의 분양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당사와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책임이 있음. • 계약자 또는 분양권 양수인이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일 경우에 계약을 하거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외국인 토지법 및 관련법규에 따른 신고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있으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함.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L라운지,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보육시설, 주민공동시설(작은도서관, 키즈스터디, 샤워실, 탈의실, 화장실,다목적실), 주민운동시설[실외 운동시설, 휘트니스센터, GX룸, 실내골프클럽, 스크린 골프, 탁구장](부대복리시설 관련 명칭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27호에 따라 도장공사 · 도배공사 · 가구공사 · 타일공사 · 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전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예정임.

■ 입주예정일 : 2022년 7월경 예정(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할 예정임.)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일수에 따른 선납할인율이 적용 됨. • 입주지정기간에는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 됨.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은「공동주택관리법」및「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적용 됨.

Ⅵ 추가 선택품목 계약(유상옵션)

■ 발코니 확장 금액
(1)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원, VAT포함)

주택형(㎡)	59	73	84A	84B	84C
발코니 확장금액	13,000,000	16,500,000	17,500,000	17,000,000	17,500,000
계약금(10%) – 계약시 –	1,300,000	1,650,000	1,750,000	1,700,000	1,750,000
잔금(90%) – 입주지정일 –	11,700,000	14,850,000	15,750,000	15,300,000	15,750,000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안내
• 아래의 계좌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 계좌로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입금 요망.
• 계약금 납부 :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시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현금 등 수납불가,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별도의 환불이자는 없음) • 아래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확장비용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및 추가 선택품목 입금계좌와 혼돈하지 않으시기 바람.(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음.)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 고
발코니확장 공사비 계약금	국민은행	465101－01－278262	롯데건설(주)	입금시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ex) 101동 101호 홍길동 : 1010101 홍길동
발코니확장 공사비 잔금	국민은행	465101－01－278275	롯데건설(주)	계약자별 가상계좌 별도안내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4호, 제46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금액으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 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전시하며, 비확장세대는 확장형과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확인하여야 함.
• 발코니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상기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창호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 시공시 인 · 허가 협의 완료후 변경될 수 있음. • 시공상(설계변경, 자재발주, 골조공사 등)의 문제로 계약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 (변경)계약이 불가능 하며, 발코니 확장 계약등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인접세대(좌/우,상/하부 세대 등)가 비확장일 경우 추가 단열공사 등으로 인하여 일부 벽 또는 천장이 돌출 시공 될 수 있음.
• 상기 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수 있음. • 발코니 확장 공사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함.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 및 모델은 제품의 품절 · 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손잡이 모양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및 구조체,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함.
• 발코니 비확장시 외부벽면에는 창호가 시공되지 않으며,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TYPE 등의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발코니 비확장에 따른 세부 계약조건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람.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범위 내에서 시공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함. • 상기 발코니 확장은 일괄 확장을 전제하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 발코니 확장 계약 체결시 발코니 확장여부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자재발주 및 시공상 문제로 인하여 변경이 불가능함.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 및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수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달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입주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되었으며, 비확장세대는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으므로 이를 양지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확장 및 위치,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발코니 외부 전면 창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선홈통 BOX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음.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확장 공사를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의 민원 발생 시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함.
•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사무소(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발코니 개별 확장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한,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시공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형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 있는 안방 발코니 창호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안방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 (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 됨)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 · 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확장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수납장의 길이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상부세대가 발코니 미확장 세대일 경우,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정 및 커튼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옵션 선택에 따라 일괄제공되는 품목은 발코니 확장 공사 미선택시(미계약체결) 시공되지 아니함.

■ 추가 선택품목
– 추가 선택사항 옵션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개이며, 판매일정은 추후 수분양자에게 별도로 공지하고 계약 진행예정임.
– 추가 선택품목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추가 선택품목의 판매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잔금 등),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사항 등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1) 시스템 에어컨 공급금액 (제조사 : 삼성전자) (단위 :원, VAT포함)

주택형(㎡)	옵 션		선택형	실내기(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계약시	잔 금(90%) 입주지정일	비 고
59	일반 무풍형	옵션1	거실+안방	2	3,500,000	350,000	3,150,000	입금시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ex) 101동 101호 홍길동 : 1010101 홍길동
		옵션2	거실+안방+침실1+침실2	4	5,900,000	590,000	5,310,000	
	공기청정 무풍형	옵션1	거실+안방	2	4,200,000	420,000	3,780,000	
		옵션2	거실+안방+침실1+침실2	4	7,500,000	750,000	6,750,000	
73	일반 무풍형	옵션1	거실+안방	2	3,500,000	350,000	3,150,000	
		옵션2	거실+안방+침실1+침실2	4	5,900,000	590,000	5,310,000	
	공기청정 무풍형	옵션1	거실+안방	2	4,200,000	420,000	3,780,000	
		옵션2	거실+안방+침실1+침실2	4	7,500,000	750,000	6,750,000	
84A	일반 무풍형	옵션1	거실+주방+안방	3	5,300,000	530,000	4,770,000	
		옵션2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5	7,700,000	770,000	6,930,000	
	공기청정 무풍형	옵션1	거실+주방+안방	3	6,500,000	650,000	5,850,000	
		옵션2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5	9,200,000	920,000	8,280,000	
84B	일반 무풍형	옵션1	거실+주방+안방	3	5,300,000	530,000	4,770,000	
		옵션2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가족실	6	9,500,000	950,000	8,550,000	
		옵션3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5	7,700,000	770,000	6,930,000	
	공기청정 무풍형	옵션1	거실+주방+안방	3	6,500,000	650,000	5,850,000	
		옵션2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가족실	6	11,500,000	1,150,000	10,350,000	
		옵션3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5	9,200,000	920,000	8,280,000	
84C	일반 무풍형	옵션1	거실+주방+안방	3	5,300,000	530,000	4,770,000	
		옵션2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5	7,700,000	770,000	6,930,000	
	공기청정 무풍형	옵션1	거실+주방+안방	3	6,500,000	650,000	5,850,000	
		옵션2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5	9,200,000	920,000	8,280,000	

■ 시스템 에어컨 관련 유의사항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은 발코니 확장옵션을 선택한 세대에 한하여 공급함. • 상기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금액은 본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상기 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상기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시 세대 내 냉매배관 및 배관연결구는 시공되지 않으므로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 설치할 수 없음. (시스템에어컨 옵션 공급금액은 기존 냉매매립배관비용을 차감하여 산정된 가격임) • 상기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 • 상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설치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음 (실외기는 실외기 공간에 설치) • 상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 및 배관경로, 단열재 두께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추후 유선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됨.
• 상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미 선택시 에어컨 냉매배관은 안방, 거실에만 시공 됨.

(2) 추가 선택품목 일반가구, 특화 디자인 가구 공급금액 (단위 :원, VAT포함)

구 분		주택형(㎡)	공급금액	계약금(10%) 계약시	잔 금(90%) 입주지정일	비 고
안방 붙박이장	붙박이장	73	3,400,000	340,000	3,060,000	입금시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ex) 101동 101호 홍길동 : 1010101 홍길동
		84A, 84B, 84C	3,500,000	350,000	3,150,000	
현관	중문	전타입	1,500,000	150,000	1,350,000	
주방	장식장	84A, 84B, 84C	1,800,000	180,000	1,620,000	
	주방 상판/벽 엔지니어드 스톤	59	2,900,000	290,000	2,610,000	
		73	3,100,000	310,000	2,790,000	
		84A	3,500,000	350,000	3,150,000	
		84B	3,200,000	320,000	2,880,000	
		84C	3,500,000	350,000	3,150,000	

(3) 추가 선택품목 가전기기 공급금액 (단위 :원, VAT포함)

구 분	제조사	주택형(㎡)	공급금액	계약금(10%) 계약시	잔 금(90%) 입주지정일	비 고
빌트인 김치냉장고 + 키큰장 특화	삼성	전 타입	1,600,000	160,000	1,440,000	입금시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ex) 101동 101호 홍길동 : 1010101 홍길동
빌트인 양문형 냉장고	삼성	전 타입	5,400,000	540,000	4,860,000	
하이브리드 쿡탑	쿠쿠	전 타입	500,000	50,000	450,000	
전기오븐	삼성	전 타입	300,000	30,000	270,000	

■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아래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옵션품목비용은 인정하지 않으며,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혼돈하지 않으시기 바람.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아래의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함.(단, 추후(계약전 등) 가상계좌(동호수마다 다름)를 안내할 경우 반드시 해당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
• 계약금 납부 : 계약시 아래 계좌 입금 후 입금증을 지참하시어 견본주택에 제출하시기 바람.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 신용카드 결제 불가)
• 통합옵션 선택품목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10%), 잔금(90%)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시공사가 적의 조정한 별매품에 준함.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 고
추가 선택품목 계약금 납부계좌	국민은행	465101－01－278262	롯데건설(주)	입금시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ex) 101동 101호 홍길동 : 1010101 홍길동
추가 선택품목 잔금 납부계좌	국민은행	465101－01－278275	롯데건설(주)	계약자별 가상계좌 별도 안내

(1) 유의사항
•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10%), 잔금(90%)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시공사가 적의 조정한 별도 공급계약서에 준함.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추가 선택품목 대금은 아파트 공급계약금액과 별개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추가 선택품목 공급가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의 판매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잔금 등),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기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확인 바람. • 추가 선택품목과 관련하여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 할 수 없음. • 추가 선택품목은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 확장시에만 선택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은 아파트 공급계약의 부수되는 마감공사로서 소요자재를 선 발주하여 미리 확보하여야 함에 따라 계약 이후 계약의 변경 및 해제시 원상복구, 변경공사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되는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가 불가함.(단, 수분양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경우 사업주체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본 아파트 계약 해제사유와 동일하며,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함께 자동으로 해제 또는 취소 됨. • 추가 선택품목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총 선택품목금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에 귀속 됨. 단,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착수일(공사업체 및 자재선정 등의 업무 포함)후에는 사업주체는 위약금을 초과하여 발생된 손실에 대하여 수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사업주체의 귀책으로 선택품목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사업주체는 수분양자에게 총 옵션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함.
• 추가 선택품목계약은 본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양도/양수 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 공급계약 양도/양수시 포괄적으로 승계됨. • 추가 선택품목계약 대금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소비자 상대업종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3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함. • 추가 선택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전시(일부 또는 전체)되오니 계약 체결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Ⅶ 기타 주요사항

■ 친환경 주택의 성능수준
• 당 현장은 2014년 08월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사업장으로, 경과규정의 적용가능한 법적기준(친환경관련 포함)에 대해서는 최초접수일(혹은 완료일) 당시의 기준을 준수함.
• 의무사항 이행여부

의 무 사 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필요시)
고기밀 창호	적용	외기에 직접 면한 창의 기밀성능은 KS F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에 의해 그 성능이 1등급 이상을 만족하는 제품적용.
고효율기자재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적용(펌프, 전동기)
대기전력자단장치	적용	거실, 침실, 주방에 대기전력차단스위치를 각 개소에 1개 이상 설치.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세대 내 현관에 설치 (60㎡ 미만 세대 제외)
고효율조명기구	적용	세대 및 공용부위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고효율조명기구 또는 LED조명기구 적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 설치.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거실 및 각 침실에 실별온도제어 가능한 온도조절장치 설치.
절수기기	적용	세대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제 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 설치.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 내용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보증회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함.

주택분양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1292019 – 101 – 0009600 호	135,784,740,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주)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구 분	내 용
보증사고 (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 · 파산 · 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 · 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 · 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접수일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보증약관 제2조)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서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 ·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를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새시, 마이너스 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1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사업주체	상 호	약사촉진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주 소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40, 2층(소양로 4가 115–7)
	사업자등록번호	221 – 82 – 14562
시공사	상 호	롯데건설 주식회사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14길 29(잠원동 50–2)
	사업자등록번호	114 – 81 – 16377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 분	감 리 회 사	감 리 금 액 (단위: 원)	비 고
건 축	㈜천일건축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2,579,762,900	VAT 포함
전 기	㈜케이제이종합엔지니어링	653,499,000	
소방, 정보통신	㈜두성엠이에프	546,700,0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동등으로 증감될 수 있음. (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Ⅷ 유의사항 안내

■ 설계관련 유의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아래 사항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주변 환경 관련

도로 및 기반시설	당 현장의 구역내에는 어린이공원(2개소), 완충녹지(1개소), 소공원(1개소)는 무상귀속 부지로 단지 내 소유공원이 아니며, 실제 시공시 인접단지 여건 또는 인허가에 따라 경사도 및 레벨계획, 형태, 디자인, 시설과 용지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카달로그, CG, 모형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추후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향후 춘천 약사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라 기반시설(도로, 공원, 완충녹지 등)의 토지이용계획, 규모, 위치, 용도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단지 남측 순복음제일교회의 출입을 위한 도로개설을 위해 인접하여 위치한 어린이공원의 면적이 일부 감소할 수 있음
	단지 서측 20m도로는 기 공사완료되어 개통되어 있음. 단, 공부상의 도로의 폭과 상이할 수 있음
단지주변 도로	단지 서측 20m도로의 경우 보행가능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도로변에는 별도의 방음시설이 설치되지 않고 이로 인하여 도로에 인접한 주동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단지 남측 10m도로의 경우 보행가능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도로변에는 별도의 방음시설이 설치되지 않고 이로 인하여 도로에 인접한 주동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단지 북측 소공원 좌측 모서리 구간은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현재 개설된 도로의 선형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단지 북측 25m도로의 경우 보행가능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도로변에는 완충녹지 외에 별도의 방음시설이 설치되지 않고 이로 인하여 도로에 인접한 주동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단지 동측 하천변 도로는 일방통행이 아님
단지주변 시설	단지 남서측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약 4개층 규모)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01동, 102동 일부세대는 일조권, 조망권,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
	단지 남측에 순복음제일교회 및 교회 관사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02동,103동 일부세대는 일조권, 조망권,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
	단지 북측(105동과 106동 사이) 외부에 버스정류장이 있으며 이로 인해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및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음
휀스설치구간	단지 외곽에는 휀스가 설치되지 않으나 대지경계에 접한 녹지에 생울타리가 조성될 예정이며 보행자 출입구간에는 별도의 외부인 차단을 위한 시설이 설치되지 않음

(2) 기타사항

인허가	당 현장은 2014년 02월 최초 사전승인신청, 2014년 07월 최초 사업시행인가접수(2014년 08월 완료)를 한 사업장으로, 경과규정의 적용가능한 법적기준(친환경관련 포함)에 대해서는 최초접수일(혹은 완료일) 당시의 기준을 준수함.
	아파트 본공사 시, 현장여건 및 구조 · 성능 ·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등 인허가 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분양 후 경미한 변경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별도로 사전고지 않음.
	당 현장은 춘천 약사재정비촉진지구내 재정비촉진계획에 의거 진행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향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의해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 등 일부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분양홍보물 (모형, 카다로그, 각종 광고지)	분양홍보에 사용된 모형(단지모형, 세대모형, 커뮤니티모형 등)과 카달로그 및 각종 인쇄물, 기타 홍보물에 삽입된 CG(광역위치도,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조경도, 주민공동시설 및 단위세대 입체도와 평면도 등)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또한,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의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3) 단지

공통사항	각동별 주동 출입구는 동별 특성에 따라 디자인 및 높이, 폭, 동선 등이 상이하며 주동 출입구로 인해 인접세대에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본공사 시, 시공여건 고려 혹은 디자인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주동과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마감재료 및 패턴디자인, 옥상장식물, 창틀모양 등), 지하출입구, 선큰, 외부시설물 (난간디테일, 문주, 천창, 드라이에어리어 DA), 조경디자인(식재, 시설물, 구조물, 조경바닥패턴 등), 주차장 구조체 공법 (DECK PLATE 또는 PC공법)은 경미한 변경 등 인허가 절차를 통해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부위별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 및 의견에 의해 변경될 수 없음.
	주동의 동출입구, 저층부 3개층 높이(필로티 계획 주동의 경우 필로티 포함, 필로티 내벽면, 계단실 및 공용홀 제외)는 지정석재 마감임 커뮤니티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외부입면은 석재마감 및 석재뿜칠 혼합마감임. 재료의 색상 및 디자인은 시공 중 변경될 수 있음.
	단지 주변도로, 단지 내 차로 및 비상차로, 지하주차장 출입구, 단지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에 인접한 저층세대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에 의한 각종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음.
	각동의 저층부 세대는 문주, 주차출입구, 부대시설, 가로등, 진출입 차량의 전조등 등에 의해 소음, 조망 등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및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빛공해 저감을 위하여 일부 차폐형 식재,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나 세대별로 계획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일부 해당 구조물이나 시설로 인하여 세대의 일조와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인허가절차상의 각종 인증 및 심사를 통해 일부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단지내 외부용 E/V는 커뮤니티 선큰쪽에 총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통행으로 인한 인접 동(101,105동)의 저층부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아파트 옥상부에 의장용 구조물, 안테나, 피뢰침, 경관조명, 인명대피공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특히, 안테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동통신설비 구축을 위해 옥탑에 설치됨, 추후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단지 내 조경식재, 수경시설, 야간조명 및 홈네트워킹설비 등의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후 관리규약에 따르며 조경공간의 개선을 위하여 수경시설이 추가 계획될 수 있음
	단지 내 옹벽, 조경식재, 마운딩, 플랜터 등 구조물 구성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에 프라이버시, 조망, 일조에 침해가 있을 수 있음.
	홈네트워크 서버의 경우 고정IP(전용회선)사용으로 관리 비용이 발생됨.
	단지 내 설치되는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주민공동시설 및 대지 내 공지, 수경시설, 소방도로, 보행가로변에 인접한 세대에는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각동 필로티 내부 및 주출입구에 인접하여 자전거보관소가 설치가 되어 일부 통행에 불편이 있을수 있으며, 저층 일부세대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단지 내 공동주택용 쓰레기분리수거장이 8개소(공동주택용 7개소, 근린생활시설용 1개소) 설치될 예정이며 101동 서측, 102동 서측, 103동 북측, 104동 북측, 105동 동측, 106동 북측, 107동 동측에 계획되어 있으며 106동과 107동의 쓰레기분리수거함은 통합 설치될 수 있음. 외부 조경공간의 배치 개선 작업에 더불어 쓰레기분리수거함의 위치가 다소 조정될 수 있음. 특히 101동의 서측은 어린이놀이터를 중심으로 북측에서 남측으로 위치 이동을 검토 중이며 105동은 북측 지상주차장에 인접한 위치로 위치 이동을 검토 중임. 쓰레기분리수거장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각 쓰레기분리수거함의 위치는 시공 여건에 따라 분양 시와 다소 상이해 질 수 있으며 각 동출입구와 쓰레기분리수거장의 거리가 상이함
	단지내 조경시설물, 도로선형, 쓰레기분리수거장, DA 등은 본공사 시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해 위치, 디자인, 구조, 높이,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단지 내 가스공급을 위한 별도의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협의에 따라 설치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단지 내 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로, 선형, 폭, 조경 및 식재계획, 포장패턴, 외부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 등은 변경될 수 있음.
	단지 내 소방안전매트가 설치가 권장될 경우 해당 구간에 식재에 제한이 있어(교목 및 관목 식재 불가)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로경관에 변경이 발생될 수 있음
	107동 남측 근린생활시설 상부, 101동 하부에 계획된 커뮤니티시설 상부에는 세대 미관 개선을 위하여 인조잔디를 설치할 예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서 디자인 및 범위는 변경될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 인접동 (107동), 커뮤니티시설 인접동(101동,102동,105동,106동)의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일부 소방 전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선구간에는 잔디블록이 적용될 계획이나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포장재가 변경될 수 있음
	단지를 관통하는 차량 통행로에는 차량 통행을 위한 아스콘 포장재가 계획되어 있으나 교차로 등에 한하여 블록 등 다른 마감재가 사용되며 세대 경관 개선을 위하여 지상주차 구역에 블록재를 계획할 예정이나 대관 협의 등의 과정을 통하여 마감재가 변경될 수 있음
	105동 서측 맞은편 중앙광장부에 인접하여 어린이 버스 승하차를 위한 드랍오프존 및 대기를 위한 공간이 조성되나 지붕과 기둥으로 이루어진 파고라형 시설물로 설치될 예정이며 해당 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어린이 버스 승하차가 단지 내 도로를 이용할 수 있음
	엘리베이터 홀의 창호는 건축법 및 소방법에 따라 전층 개폐가 가능한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됨. 단, 일부 주동(101동 1,2호라인, 102동 5,6호라인, 103동 1,2,5,6호라인, 104동 1,2,6,7호라인, 105동 1,2,6,7호라인, 106동 1,2호라인, 107동 1,2호라인)은 공용홀에 창호가 계획되어 있지 않음
	입주 시 단지 바닥마감, 조경, 창호형태, 입면장식몰딩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 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1층에서 E/V를 통한 이삿짐 운반을 할 수 있음.
	101동과 102동 사이 하부 지하2층~지하1층에는 발전기실/전기실/기계실/저수조 등 각종 기전시설 공간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와 연접한 주동 (101동, 102동)의 인접세대는 소음 및 진동의 발생으로 생활권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음. 단, 본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필로티	101동 1,2,4호열, 102동 3,6호열, 103동 2,4,5호열, 104동 1,2,4,6호열, 105동 1,2,4,7호열, 106동 1,2,4호열, 107동 1,2호열에 1개층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음.
문주	문주는 단지 서측 주출입구에 게이트형 1개소, 단지 남측 부출입구에는 별도의 문주가 없음.
	주출입구의 게이트형 문주의 디자인은 본공사 시, 경비실 일체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부출입구에는 별도의 문주가 신설될 수 있음. 단, 인허가청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 및 설치여부가 결정될 예정임

단지출입구	당 단지에 총 2개소의 단지출입구(101동과 107동 사이의 차량출입구, 102동과 103동 사이의 차량출입구)가 있으며, 단지 북측 완충녹지에서 당단지로 출입할 수 있는 별도의 보행자출입구 1개소가 계획되어 있음. 다만, 인허가 및 공사과정에서 일부 위치 및 형태 및 개소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
	단지 주출입구와 부출입구를 잇는 단지관통 차량동선이 계획되어 있으며, 수시 차량 통행에 따른 단지내 저층세대의 조망환경,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및 차량전조등으로 인한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음
아파트 주동	101동 남서측으로 어린이놀이터,북측으로 유아놀이터가 설치되어 저층 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101동 남측으로 지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차량의 수시출입에 따른 저층 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및 차량 전조등으로 인한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음
	101동 서측에는 단지 주출입구와 이와 연계된 게이트형 문주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조망권 침해 및 야간조명, 차량전조등에 의한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101동 1,2호라인 하부 1층에 어린이집 및 경로당이 주동 하부에 설치되고 해당시설의 출입구가 주동출입구와 인접하여 설치됨에 따라 동선 혼재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101동 2호라인 하부 1층에 MDF실이 설치되어 주동의 출입구와 출입동선 혼재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발생될 수 있고, 인접세대 진동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101동 1호라인측면, 2호라인 후면, 3,4호라인 전면, 3호라인 측면, 5호라인 측면, 4호라인 필로티내부에 DA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 및 인접세대에 진동 및 소음, 악취 및 매연발생, 조망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단, 추후 본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101동 1호라인 전면에 지하 캐슬리안센터로 내려가는 외부용엘리베이터와 선큰과 연계된 계단이 설치되어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등이 발생될 수 있음
	101동 남서측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약 4개층 규모)가 위치하고 있으며, 일부 저층세대는 일조권, 조망권,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
	102동 북측으로 중앙광장 및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저층 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및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음
	102동 남서측으로 지상주차장, 남측으로 단지부출입구와 지하주차장 출입램프가 설치되어 차량의 수시출입에 따른 저층 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및 차량 전조등으로 인한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음
	102동 2,3,4호라인 전면, 6호라인 후면, 3호라인 및 6호라인 필로티내부에 DA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진동 및 소음, 악취 및 매연발생, 조망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단, 추후 본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102동 남서측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약 4개층 규모)와 남측에 순복음제일교회 및 교회 관사가 위치하고 있으며, 일부 저층세대는 일조권, 조망권,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
	103동 북측으로 어린이놀이터, 남측으로 야외운동공간이 설치되어 저층 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103동 남서측으로 지하주차장 출입램프가 설치되어 차량의 수시출입에 따른 저층 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및 차량 전조등으로 인한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음
	103동 1호라인 측면, 5호라인 전면, 6호라인 측면, 4호라인 필로티내부에 DA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진동 및 소음, 악취 및 매연발생, 조망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단, 추후 본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103동 남측과 동측에 무상귀속시설인 어린이공원이 계획되어 있으며, 외부인의 출입에 따른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103동 남측에 순복음제일교회 및 교회 관사가 존치되어 위치하고 있으며, 일부 저층세대는 일조권, 조망권,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
	104동 북측으로 휴게공간, 동측으로 주민운동시설, 서측으로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되어 저층 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및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음
	104동 남동측에 무상귀속시설인 어린이공원이 계획되어 있으며, 외부인의 출입에 따른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104동 1,2호라인 후면, 1,4,6호라인 필로티내부에 DA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진동 및 소음, 악취 및 매연발생, 조망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단, 추후 본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104동 북측으로 완충녹지(무상귀속)공간이 조성되며, 외부인의 출입에 따른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도로와 시야, 소음, 매연차단을 위한 낮은 언덕이 계획되어 있어 이에 따른 저층세대의 조망권 및 일조권 침해등이 발생될 수 있음
	105동 동측으로 휴게공간, 남측으로 어린이놀이터, 서측으로 중앙광장 및 휴게공간이 설치되어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105동 북측으로 지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차량의 수시출입에 따른 저층 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및 차량 전조등으로 인한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음
	105동 1,2호라인 후면, 3,4호라인 전면, 1,4,7호라인 필로티내부에 DA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진동 및 소음, 악취 및 매연발생, 조망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단, 추후 본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105동 3,4호라인 전면에 지하주차장 채광을 위한 선큰공간이 계획되어 저층세대에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105동 남측에 차량대기공간이 조성되어 있어 소음 및 빛공해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105동 북측으로 완충녹지(무상귀속)공간이 조성되며, 외부인의 출입에 따른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도로와 시야, 소음,매연차단을 위한 낮은 언덕이 계획되어 있어 이에 따른 저층세대의 조망권 및 일조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105동 북측에 단지출입을 위한 보행자 출입구가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및 환경권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106동 동측으로 아파트용 지상주차장 및 서측으로 근린생활시설용 주차장이 설치되어 차량의 수시출입에 따른 저층 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및 차량 전조등으로 인한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음
	106동 서측으로 지하주차장 진입램프와 램프까지 진입하기 위한 지상차량동선이 계획되어 차량의 수시출입에 따른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및 차량 전조등으로 인한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음
	106동 남측으로 유아놀이터가 계획되어 이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에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빛공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106동 4호라인 전면, 1호,4호라인 내부, 1,2호라인 후면 지하주차장 램프인근에 DA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진동 및 소음, 악취 및 매연발생, 조망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단, 추후 본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106동 3,4호라인 전면에 지하주차장 채광을 위한 선큰공간이 계획되어 저층세대에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106동 북측으로 완충녹지(무상귀속)공간이 조성되며, 외부인의 출입에 따른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도로와 시야, 소음, 매연차단을 위한 낮은 언덕이 계획되어 있어 이에 따른 저층세대의 조망권 및 일조권 침해등이 발생될 수 있음
	107동 남측으로 근린생활시설과 상가용 지상주차장, 1,2호라인 북측으로 지하주차장 출입램프가 계획되어 차량의 수시출입에 따른 저층 세대의 프라이버시침해, 소음 및 차량 전조등으로 인한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음
	107동 북측에 무상귀속시설인 소공원이 계획되어 있으며, 외부인의 출입에 따른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107동 남측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조망권 침해가 있을 수 있음
	107동 1,2호라인 후면 지하주차장 램프인근, 2호라인 내부, 4호라인 후면에 DA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진동 및 소음, 악취 및 매연발생, 조망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단, 추후 본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107동 3,4호 라인 세대는 임대동으로 계획되어 있음
	주동 주변 또는 주동과 접하여 쓰레기 분리수거장, 드라이에어리어(DA), 자전거보관대 등이 설치되어 소음, 진동, 냄새, 매연, 조망, 눈부심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동 하부 지하1층, 지하2층에 제연휀룸이 계획되어 주동에 인접하여 제연휀룸 급기 DA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추후 실시공시 휀룸의 기능상의 이유로 DA가 일부 추가 이동될수 있음
주차장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지하 1층~2층까지 2개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지하주차장의 진출입구는 단지내 총 2개소로, 단지 북측 106동과 107동 사이 램프진입 1개소, 단지 남측 103동 인근 램프진입 1개소 계획되어 있음
	지하주차장 차량 이동통로의 사용가능 높이는 2.3M 계획되어 있으며, 2.3M를 초과하는 높이의 택배차량 등의 차량은 지하주차장 진입이 불가능함.
	단지 내 지상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으며, 105동 후면에 23대, 102동 전면에 46대 총 69대 계획됨에 따라, 인접한 단지 (101동,102동,105동,106동)은 프라이버시침해, 차량소음 및 전조등에 의한 각종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음
	지하주차장은 공법은 RC 또는 PC+DECK(탈형) 공법으로 적용할 예정이며, DECK구간은 뿜칠마감 시공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현장여건에 따라 지하주차장 공법은 RC+PC구조 혼합형으로 변경될 수 있음)
	단지 내 지하주차장 출입구 근처 저층부 세대는 차량불빛, 소음, 진동 등에 따른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동위치와 형태에 따라 주차장 이용의 거리가 상이하여 불편할 수 있음.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본공사 시 용도, 규모, 구조, 동선, 주차면위치, 디자인,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지하주차장 주차공간의 일반주차 폭 2.3M~2.4M, 확장주차 폭 2.5M, 경형주차 폭 2.0M로 계획되었으나 시공오차에 따라 폭이 축소될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은 지상층에 별도구획 되어 있으며, 장애인 주차구획 포함 총 5대 계획되어 있음
	발전기실/전기실/기계실/저수조 등 각종 기전시설 공간이 지하에 계획되어 있으며, 이와 인접한 주동(101동, 102동)의 인접세대는 소음 및 진동의 발생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가 있을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현재 인허가가 완료된 도면에는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차량램프의 지붕설치 계획이 없으나 착공이후 인허가 변경을 통해 설치유무가 결정될 예정이며 견본주택 내부 모형물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붕을 설치하여 제작되었음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 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및 주민공동시설(캐슬리안센터) 일체는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등에 의해 본공사 시 내 · 외부 디자인과 용도, 규모, 구조, 높이, 재료, 창호사양 및 규격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은 단지 서측 주출입구 인근에 1개층규모 1개소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인접한 101동, 106동, 107동의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일조권, 프라이버시침해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의 주차는 모두 지상에 별도로 계획되어 있음.
	근린생활시설 옥상 또는 후면의 별도의 공간에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어, 이에 따라 조경계획이 일부 변경될수 있고, 인접 주동(106동,107동)에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되거나 조망권 침해 등 환경권 영향을 받을 수 있음. 단, 추후 본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주민공동시설(캐슬리안센터 : 관리사무소, 작은도서관, 피트니스, 실내골프, 탁구장, 샤워/탈의실 등)이 101동하부 지하1층에 설치되며, 접근을 위한 외부엘리베이터와 채광확보를 위한 선큰 및 계단이 별도 설치됨, 이로 인해 인접한 세대에 소음 및 진동,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단, 추후 본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경로당, 어린이집은 101동1,2호라인 지상1층에 설치되며,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이로 인해 인접한 저층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및 주민공동시설 일체의 운영 및 유지 관리는 입주민이 자치적으로 하여야 함.
	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의 이동식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음. 경로당, 어린이집에 현관장 및 주방장이 제공되며, 바닥 난방과 천정형 에어컨이 설치됨. 작은도서관 및 독서실의 도서(1,000권) 및 가구류, 실내운동시설(피트니스, 실내골프, 탁구장)의 운동장비(소모성 또는 개인장구류 제외) 및 탈의실 라커류는 제공되며, 기타 주민공동시설의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음.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상 국 · 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 단지임(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해당)
	사용검사 신청 전 사업주체는 관할 관청과 국 · 공립어린이집에 관한 제반사항(정원, 설치 · 운영에 대한 비용의 분담비율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입주자 비용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본 단지의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 및 단지내 공용부를 입주민의 입주지원 및 하자 보수를 위해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음. 준공 후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의 일부공간은 입주고객의 입주관리 및 A/S업무를 위한 입주관리 사무실 및 A/S센터로 일정기간 운영된 뒤 향후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될 계획임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캐슬리안센터)의 에어컨 실외기는 인접한 지상공간에 별도로 설치되어 이에 따라 조경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 주동(101동,102동)에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되거나 조망권 침해, 펜가동에 따른 바람 등 환경권 영향을 받을 수 있음. 단, 추후 본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무인택배보관소	무인택배보관소는 각동별 1개소씩 설치되며(필로티내부) 인접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음. 단, 추후 본공사시 필로티공간내에서 그위치는 변경될수 있음
기타사항	단지 주출입구에는 별도의 경비실이 계획되어 있지 않으며, 부출입구에는 경비실이 차량출입구와 연계하여 1개소 설치됨, 단 경비실의 개수, 주차차단기의 위치 및 규모, 개수는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단지 내 쓰레기분리수거장(8개소), 외부 드라이에어리어(DA)(29개소), 자전거보관대(19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치와 형태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음.

(4) 단위세대

단위세대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부위의 경우 외측 벽체 및 천장 일부에 결로방지를 위해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되어질수 있으며, 이 경우 견본주택에 비해 발코니 면적 및 높이가 축소될수 있음.
	인허가 도서상 단위세대의 타입은 분양세대(59, 73, 84A, 84B, 84C)로 구분되어 있음
	단위세대는 대칭형세대가 있어 거실, 안방, 침실, 부엌의 방향이 상이하게 설치되니 현관 앞에 설치되는 계단 및 E/V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람.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세대분전반, 통합단자함,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엘리베이터에 면한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음.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 수전 등은 확장형세대와 차이가 있음.
	옵션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의 종류 및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일부 발코니에는 선홈통 및 배수구가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수전이 설치되지 않은 발코니는 물청소를 위한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세탁기 등을 두는 발코니 및 보조주방의 경우 발코니 확장유무와 관계없이 비난방 공간임.
	물을 사용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욕실에 바닥난방이 적용되며 샤워실, 욕조 하부에는 난방이 설치되지 않음.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세대 주방배기가 당해층 직배기 방식으로 인접세대에 냄새가 전달될 수 있음.
	59타입과 84B타입의 경우, 별도의 대피공간이 계획되어 있지 않으며, 59타입은 침실1 발코니, 84B타입은 안방발코니를 통해 진입 가능한 에어컨 실외기실 내부에 화재시 인접세대로 이동할 수 있는 파괴하기 쉬운 경량벽체가 설치되어 있음
	73, 84A, 84C타입의 경우 드레스룸에서 진입가능한 대피공간이 별도로 계획되어 있음
	소방법에 따라 일부 타입 세대(3층~10층)에는 완강기가 설치되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세대내 실외기실 천장에 전열교환 환기장치 및 급,배기덕트가 시공되며, 환기장치 작동으로 인해 일부 세대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발코니 천정에 설치되는 전동빨래 건조대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세대 평면 구조에 따라 발코니 내에 도시가스 배관 및 가스계량기, 환기구가 설치될 수 있음
	주방 렌지후드 상부장은 주방 자동식소화기 설치공간이기 때문에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어려움.
	욕실 천장에는 욕실 환기용 배기팬 및 배관 점검용 점검구가 설치됨.
	같은 주동 내 세대간 층단차이 발생구간의 외부 노출세대는 단열재 적용에 의하여 상층부세대와 하층부세대의 사용면적이 상이할수 있음.(법적면적은 동일함).
	강마루의 특성상 반복되는 패턴으로 인위적인 느낌이 들 수 있으며, 본공사시 유사 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음.
	단위세대 주방의 식탁 위치는 입주후 입주자의 식탁의 배치와 관계없이 설계시 적정위치로 계획하였으며, 식탁용 조명기구는 계획되는 식탁 위에 설치되며 위치 변경은 불가함. 입주 후 식탁등의 설치방향을 변경할 수 없음.
	세대 디딤석 및 주방상판 및 주방벽은 자재 특성상 시공 이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와 무관함
	타일 줄눈위치 및 각 액세서리 위치는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현장 시공 여건에 따라 타일 및 벽 타일의 나누기도는 변경될 수 있음.
	단위세대에 적용되는 모든 자재는 시공시기의 생산 여건에 따라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급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수 있음.
	자재에 따라 색상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당초 색상, 디자인과 달라 보일 수 있음.
	석재 등 천연자재의 경우 본공사시 자재의 특성상 패턴 및 색상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음.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카달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마감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판단은 KS 기준에 한함.
	타입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가전 일체)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세대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람.
	견본주택은 가전 기기를 포함한 일부 유상옵션 품목을 포함하여 설치되었으며, 유상옵션 품목은 타입별, 형별에 따라 적용 가능한 품목의 차이가 있으니 공급간지 및 유상옵션 품목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10mm) 있을 수 있으나 욕실의 신발 걸림과 무관함.
	중문(유상옵션) 및 세대 도어를 비롯한 샤워부스, 욕실장 등 제작제품의 경우 디자인, 세부사양, 컬러, 손잡이 사양 등이 본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중문(유상옵션)은 추후 하자보수를 위해 위치가 조정될 수 있음.
	현관 신발장, 복도팬트리, 주방가구, 각실 붙박이장, 드레스룸,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세대형별로 상이하여 일부 평면에는 가구가 미적용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포함 여부를 확인바람.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실제 본공사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정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기본형 세대 선택시 가구배치 및 장량, 마감, 창호 등이 확장 세대와 상이할 수 있으며,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람.
	주방가구 높이 선택재(일반형/높은작업대형)는 확장시 제공되며, 확장 미선택시 일반형으로 시공 됨.
	주방가구 장식장(84A, 84B, 84C 만 해당)은 확장시 유상옵션 사항으로 확장 미선택시 옵션 선택 불가하니 계약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람.
	상부 세대 비확장시 하부세대 천정에 추가 단열공사로 인하여 우물천정의 깊이 및 사이즈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유사 이형타입의 경우 가구 길이 및 위치가 상이하며, 일부 설치불가 평면에는 가구가 미적용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시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하이브리드쿡탑(유상옵션)선택시 3구가스쿡탑은 제공되지 않음.
	일부 세대는 해당 수분양자의 동의를 얻어 선행세대(선행하여 시공, 품질관리 개선을 위한 선시공세대)로 진행 될 예정이며, 선행세대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마감재의 훼손에 대해서는 입주전 보수 또는 재시공하여 인도할 예정임
	단위세대의 안목치수 및 발코니 면적산정 등의 법규는 기본형(발코니 비확장형)으로 산정하며, 입주자에게 제공되는 유무상옵션(아트월, 가구, 창호옵션, 가전 등)으로 추가되는 마감재, 가구, 기기, 벽체 등의 두께는 안목치수 산정시 제외되었음. Ex) 거실폭의 안목치수가 4,500mm일때, 거실 아트월 타일(두께 20~30mm)마감 두께를 제외한 면적이며 타일 시공시 실측 치수는 아트월 두께 만큼 줄어들게 됨(약 4,470~4,480mm)
	동일타입의 단위세대 내에서 옵션에 따라 마감, 실의구획, 가구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람
	가구류(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욕실 거울, 현관 거울 등)의 벽, 바닥, 천장 등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내부의 일반가구, 주방가구 및 내부 벽체 마감 등은 인허가 과정 및 하자방지,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견본주택의 치수와 상이할 수 있음.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및 조적벽 등)의 접합부에는 크랙하자 방지를 위하여 일부 마감 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마감형태 부착 디테일이 상이할 수 있음.
	세대 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깊이 및 형태, 우물천장의 크기는 천정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다소 축소되거나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타일 및 엔지니어드스톤, 천연석 자재의 줄눈의 위치는 형별, 타입별로 상이하여 본 시공시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견본주택 시공 위치 및 개소와 상이할 수 있음
	엔지니어드스톤, 천연석 자재의 이음부는 자재 특성상 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자와는 무관함
	입주자가 사용을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등 일체의 이동식 가전)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당사가 안내하는 위치에 설치가 불가할 수 있음.
	인접세대(상하좌우) 및 동일 세대 내부 각 부위별 확장 여부에 따라 추가 단열공사로 인하여 발코니 및 침실, 기타 일부 구간의 벽체 및 천정의 일부가 돌출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부분의 커텐박스, 몰딩, 등박스, 걸레받이, 마감재, 가구류의 형태와 위치가 확정될 기준층 도면과 상이할 수 있음
	입주자 세대내 추가 실별가구(장롱, 붙박이장 등) 설치시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히 실측한 후 설치하여야 함
	각 세대별 기본제공품목(일반가구, 주방가구, 마감자재, 기기류) 및 유상제공품목이 상이하므로 견본주택 내 모형 및 카달로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각 타입별 옵션 선택에 따라 단열 및 벽체, 창호, 몰딩 및 걸레받이, 조명류 등의 설치 위치가 상이하여 가구와 마감재의 디자인과 품목이 상이하므로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붙박이장류(신발장, 붙박이장, 욕실장, 주방가구 등)와 접해 있는 벽, 바닥, 천장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 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설치완료 후 이동 불가함
	가구의 힌지, 레일 등의 하드웨어는 본 공사시 동등성능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주방 싱크대 하부장의 온수분배기 가림판으로 인하여 수납공간이 줄어들고, 온수분배기는 본 시공시 세대별 위치와 크기가 변경될 수 있음
	가스배관이 설치되거나 후드의 배관이 설치되는 주방의 상부장은 수납장 내부의 깊이와 형태가 변경되거나 수납공간으로 사용 불가할 수 있음
	주방 가구 상판에 별도의 물턱이 없으므로 사용시 물튀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하자의 사유가 되지 않음
	욕실 거울 및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카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람
	세대 내 목문, ABS문의 힌지 및 손잡이, 손끼임이 발생하는 코너부위 디테일 및 손끼임방지 제품의사양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욕실 세면대, 양변기, 주방개수대, 가스쿡탑의 위치는 시공 중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넘김 방지를 위하여 설계된 것으로 욕실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걸림은 하자사유가 아님
	안방 전면 비확장 발코니, 다용도실 비확장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 등의 비확장 부위의 바닥레벨은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세탁기 바닥단차 및 보조주방가구 형태는 세탁기/건조기 사용성 증진을 위해 변경될 수 있음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함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는 확장시 선택 가능한 추가선택품목 중 하나로 건립되었으며, 다른 옵션의 선택시 견본주택의 건립세대와 우물천정, 가구, 마감형태 및 사양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전 확인 바람
	상기 별도 계약 품목은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일정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하여 자재 발주를 해야 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함(추가 선택품목 계약 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임)
	추가 선택 품목의 옵션공사비는 옵션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추가선택품목의 설치 부위는 카달로그 기준으로 설치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불가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견본주택 및 카달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람
	추가 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신제품의 출시, 성능개선 등의 이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형별로 설치품목 및 설치위치가 상이하므로 세부사항은 견본주택 및 카달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람.
	추가 선택 품목 선택에 따라 배선기구, 조명, 온도조절기, 스프링클러, 환기디퓨저, 천정 몰딩 및 커텐박스, 걸레받이 등의 수량과 형태, 설치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현관중문은 유상옵션 품목으로 옵션 선택시 디딤판의 크기, 이음부 설치위치 및 개수가 상이할 수 있음
	주방벽 엔지니어드스톤 옵션 미선택시 해당위치에 국산타일 (300*600)이 시공되며 주택형별 컬러 및 모델이 상이하므로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모형 및 카달로그를 통하여 제공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주택형별 유상옵션의 상품구성 및 위치, 형태 등이 상이하므로 유상옵션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다른 주택형의 유상옵션 품목은 설치 불가함
	주방가전 선택품목은 주방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빌트인 양문형 냉장고는 유상옵션 품목으로 옵션 미 선택시 본공사시 상부장이 있는 오픈형 냉장고 장으로 일괄 설치됨
	빌트인 김치냉장고 옵션선택시 수납 효율을 높여주는 빌트인 펜트리가 같이 제공되며, 유상옵션 미선택시 상부장이 있는 오픈형 김치냉장고장이 설치됨.
	당 단지의 세대 천장고는 2,300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1층세대만 특화계획이 반영되어 천정고가 2,500으로 계획되어 있음(단, 욕실은 환기설비공간 확보를 위해 기준천정고보다 조금 낮음). 다만, 창호의 크기, 주방/일반가구의 수납공간, 목창호 크기는 1층세대도 기준층세대와 동일함.
창호	외부창호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등의 창호 사양은 풍동실험 및 외부입면 계획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에 시공된 내/외부 창호의 개폐방향은 실시공과 다를 수 있음
	세대 내 창호는 인테리어 마감, 시스템에어컨 등의 간섭을 고려하여 창호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세대 내 실외기실 루버창의 형태, 규격, 손잡이 등은 변경될 수 있음. 루버창의 색상은 같은 타입이라도 동별/층별상이함.
	비확장 선택 시 별도의 외부창호가 설치되지 않음
	확장옵션을 선택할 경우, 거실,안방을 제외한 침실의 창호(59타입의 경우 침실1창호제외, 안방창호가 포함)의 외부창호 중 개폐창에는 LS(Lift & Sliding)시스템이 적용됨. 단, 기밀 및 단열성능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개폐창호의 반대쪽 창호는 고정되어 이동 및 개폐가 불가 함
	세대별 같은 실의 창호가 실의 크기에 따라 창호의 크기, 형태 등이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음.
	세대내 목창호, 여닫이 창호 및 일반가구/주방가구 문짝의 개폐방향은 수분양자의 편의를 위해 변경될 수 있음.
기타사항	SKT 스마트홈 IOT서비스는 입주지원기간 종료 시점부터 2년간 무상 지원되며, 이후에는 유상으로 변경됨.(음성인식스피커 별도 구매)
	스마트홈 IOT연동 가전제품은 SKT와 제휴된 가전에 한함.

(5) 견본주택

공통사항	세대 현관문틀 외부의 견본주택 공용홀 마감은 제공품목 및 본공사와 무관하며 실제 시공시 적용되는 마감재의 범위는 세대현관문을 경계로 내부에 한함
	견본주택 내 적용되는 모든 자재는 시공시기, 생산여건에 따라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유사 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등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음.
	견본주택 건립평형 외 시공되는 평형의 내부치수 및 마감자재 사양은 견본주택 건립평형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견본주택에 설치된 화재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의 위치 및 수량은 견본주택 자체의 소방 대책으로 설치된 것으로 본공사시 소방법에 맞추어 시공됨.
	견본주택에 표시된 에어컨냉매매립배관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서 변경 될 수 있음.
	견본주택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의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서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음.
	견본주택에 설치된 온도조절기 및 환기컨트롤러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에 바닥배수구는 설치되지 않고, 본공사시 설치되며, 위치는 견본주택의 표기 위치와 상이할 수 있음.
	견본주택은 59, 84B, 84C 타입으로 시공되었으며, 이형 타입은 모형과 인쇄물을 참고하시어 계약전 평면 형태 및 가구배치, 실면적, 마감재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견본주택 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 설계 및 마감재등 을 촬영, 보관할 예정임.
	견본주택은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기본형 세대 선택시 제공되지 않는 품목이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품목과 추가선택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며 본 공사시에는 사업승인도서 및 계약 내용에 따라 시공되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고 전시품은 시공하지 않음
	견본주택 내 전시품은 디스플레이 가전, 인테리어 소품가구 및 패브릭, 연출용 조명(전시용 간접조명, 스탠드, 팬던트, 스팟조명 등)과 소품, 연출용 가구 및 중문 등이 포함되며 이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시 제공되지 않음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사양, 위치, 개소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되므로 이로 인한 세대 내 일부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음(마감형태, 천정 및 커튼박스, 창호, 가구 등)
	견본주택 및 카달로그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하게 표기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 형에 대한 혼동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견본주택 내 인쇄물, 입주자모집공고 및 카달로그, 홈페이지에서 사용된 단지 이미지컷 및 전시모형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작성되었으며, 비확장세대는 별도의 외부새시가 설치되지 않음
	입주자 모집 공고 및 카달로그, 홈페이지에 게시되거나 견본주택 내 부착되어 있는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컴퓨터그래픽(CG) 등은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사업주체와 시공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자재의 독점, 품절, 품귀, 업체의 부도,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시공될 수 있음.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 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계약전 견본주택 및 모형, 인쇄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공장생산 자재(타일, 엔지니어드스톤, 인조대리석, 시트, 벽지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 및 시방서에 의해 결정됨
	천연자재 (석재, 목재 등)는 자재 특성상 동일한 무늬 및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함
	세대 내부마감자재의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당초 색상 및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음

※주의사항
① 본 제작물의 평면도 및 투시도 등의 CG 삽화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다소 상이할 수 있음. ② 발코니 선홈통 및 드레인의 위치와 개수는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③ 발코니 난간의 높이나 형태는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창호의 높이, 크기,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④ 발코니 측 · 외벽에 단열재 추가 설치시 가구 및 구조체 등의 치수가 변경될 수 있음.
⑤ 가변형 구조 변경시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실제 시공시 다소 상이할 수 있음. ⑥ 배치도(CG, 모형)의 단지내 · 외부 도로선형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⑦ 주민공동시설은 기본마감까지만 시공되며, 이동가구 및 가전, 집기, 비품 등은 제공되지 않음. ⑧ 견본주택 단위세대에 설치된 소방 감지기, 유도등 및 비상방송용 스피커,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을 위한 소방설비로 실제 시공시 변경됨.

■ 견본주택 위치 :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 267번지[구 시외버스터미널]
※ 본 견본주택은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홈페이지 : http://www.lottecastle.co.kr
■ 분양문의 : ☎ 1811 – 8855
■ 견본주택 위치도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급(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및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함.)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OTTE CASTLE

11월 29일 GRAND OPEN

| 춘천 롯데캐슬 위너클래스 분양일정 |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2월03일(화)	인터넷 신청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t2you.com)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PC에서만 가능
일반공급	1순위	12월04일(수)	인터넷 신청	■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 KB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apt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 KB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www.kbstar.com) – PC : 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2순위	12월05일(목)		

1811-8855

총 873세대 일반분양 660세대 59/73/84A·B·C㎡ (전용면적)

※본 홍보물상의 사진, 이미지컷, 공원CG 및 내용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시행령 제 59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현장 위치 : 강원도 춘천시 약사동 156–1번지 일원 ※규모 : 아파트 지하2층, 지상 20층~27층 7개동, 총 87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시행사 : 약사촉진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시공사 : 롯데건설(주)

현 장 | 강원도 춘천시 약사동 156–1번지 일원 견본주택 |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 267번지 [구 시외버스터미널]